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처리기간 : 14일
(영유아보육료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)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세대주와의 관계		전화번호	
	주소					휴대전화	
						전자우편	
가족사항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동거여부	건강상태 (장애/질병)	직장명	전화번호 (집/직장)
	※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사실혼 [] 사실상 이혼)						
본인부담금 환급제와		성명	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	예금주

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

읍면동 주민센터	[] 보육료지원 ·유아학비지원 (아이행복카드)		지원대상자	신청구분			
				☐ 어린이집(0~2세) 기본 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어린이집 (0~2세) 연장, ☐ 어린이집 방과후 ☐ 어린이집 (3~5세) 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☐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 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
				☐ 어린이집(0~2세) 기본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어린이집 (0~2세) 연장, ☐ 어린이집 방과후 ☐ 어린이집 (3~5세)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☐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
				☐ 어린이집(0~2세) 기본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어린이집 (0~2세) 연장, ☐ 어린이집 방과후 ☐ 어린이집 (3~5세)([] 장애 ☐ 다문화), ☐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☐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
				☐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,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(0~2세)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	[] 가사간병방문지원		지원대상자		서비스시간		
			신청요건(1개 선택)				
			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☐ 중증질환자 ☐ 희귀난치성질환자 ☐ 소년소녀가정 ☐ 조손가정 ☐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		☐ 월 24시간 ☐ 월 27시간		
			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		☐ 월 40시간		
	[] 장애아동 가족지원	발달재활 서비스	지원대상자	장애유형	☐ 뇌병변장애 ☐ 청각장애 ☐ 시각장애 ☐ 언어장애 ☐ 지적장애 ☐ 자폐성장애 ☐ 미등록 (영유아)		
장애정도			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☐ 미등록 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 ☐ 언어 ☐ 청능 ☐ 미술심리재활 ☐ 음악재활 ☐ 행동 ☐ 놀이심리 ☐ 재활심리 ☐ 감각발달재활 ☐ 운동발달재활 ☐ 심리운동 ☐ 기타()				
	언어발달 지원	지원대상자	☐ 언어발달진단 ☐ 언어재활 ☐ 기타 ()				
[] 발달장애인 지원	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	지원대상자	자녀와의 관계		☐ 부 ☐ 모 ☐ 기타()		
	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☐ 지적장애 ☐ 자폐성장애 ☐ 미등록(영유아)	장애 정도	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
	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☐ 지적장애 ☐ 자폐성장애	장애 정도	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
		지원유형	☐ 주간활동서비스 ([] 44시간 ☐ 88시간 ☐ 120시간) ※ 88시간/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. ☐ 방과후활동서비스				
[] 지역사회 서비스	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
	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
[]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		지원대상자			지원신청	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, 주양육자 신청가능	

	[] 장애인 활동지원	지원대상자				
		긴급활동지원	[] 해당 (*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)			
		활동지원급여	신청유형	[] 신규신청	[] 변경신청	[] 갱신신청
			변경신청 사유 (*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[] 장애상태의 변화		
				[] 직장생활		[] 학교생활
				[]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		[] 취약가구
[]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				[] 거주지 이전		
[] 한부모가정 (19세 미만)		[] 조손가정 (19세 미만)				
특별지원급여	[]출산 []자립준비 []보호자일시부재([]결혼 []사망 []출산 []입원 []지역사회보호자) (*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				
보 건 소	[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	지원대상자	출산(예정)일 년 월 일			
		지원 유형	[] 단태아([] 첫째아 [] 둘째아 [] 셋째아 이상), [] 쌍생아([] 둘째아 [] 셋째아 이상) [] 삼태아 이상 []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			
		신청요건	기본 지원대상	[]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 [] 소득기준 이하		
			예외 지원 대상 (해당자만)	[]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[]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[]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[]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[] 설타민 산모 [] 결혼이민 가정 [] 미혼모 산모 []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[] 분만 취약지 산모 []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		
				서비스 제공 장소	[] 자택 [] 기타	
보건 소 주민 센터	[]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	지원대상자				
		지원 유형 (중복 체크가능,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)	기본지원대상	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 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	
			예외지원대상 (지자체 자체 사업)	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 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	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	확인 (√ 체크)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		[]

유 의 사 항		확인 (√ 체크)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,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[]
2.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[]
3.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·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[]
4.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	[]

추가제출 서류	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3.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 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 5.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------------	---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리 신청인¹⁾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 계 : (대리 신청의 경우)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·군수구청장 귀하

1)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(후견인) 등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동의	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(상담전화(TM))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- 제공항목 : 성명, 연락처(주택, 휴대전화),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명 - 제공목적 :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- 제공받는 기관 :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(카드사) - 보유기간 :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------------------	---

신청카드 (택1)	BC카드			[] 롯데카드	[] 삼성카드
	[] IBK기업은행	[] NH농협	[] SC제일은행		
	[] 경남은행	[] 광주은행	[] 대구은행		
	[] 부산은행	[] 수협은행	[] 우리은행		
	[] 전북은행	[] 제주은행	[] 우체국		

일 일 년

신청인(대리신청인)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, 사회보장정보원장, 국민행복카드 사업자(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) 대표 귀하

▶ 신청대상 : 만19세이상

-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 서비스 대상자(본인)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.
-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,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신청하신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은 국민행복카드
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,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(은행, 우체국, 카드센터
등) 방문,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
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압류자,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, 이용자의 선호
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- 수집·이용 항목
 -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: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연락처 등
 -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: 소득·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·정도 등 자격정보
 -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: 신청정보·카드번호·이용내역 등
- 수집·이용 목적
 -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
 -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(본인부담금 납부·환급 포함)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·결제(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)에 관한 업무
 -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
 -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
- 보유 기간 :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(민감정보 포함) 처리 근거 안내

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민 감 정 보 :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
- 관 련 법 률
 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(목적·항목·제공처) 안내

- 국민행복카드 발급
 - 성명, 주소, 연락처 : 해당 카드사
- 보육료·유아학비 호환결제
 - 국민행복카드번호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-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
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서비스 이용내역 :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

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- 고유식별정보(민감정보 포함)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-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

-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(대리신청인 포함)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.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:

(서명)